

3.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8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년 11월 21일),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 제안이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시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 대구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역점 시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정책자문, 혁신 의제 발굴 및 혁신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로,
- 심도 있는 논의와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 각 분야를 아우르는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이 밖에도 위원회 회의 진행 관련 사항 및 자료협조,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여,
-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서오섭)

○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 ▶ 민선7기 대구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 ▶ 대구시에서는 2030 미래비전 수립과 민선7기 시정 슬로건·방침(목표) 확정,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검토, 시민제안 수립 등 민선7기 성공적 시정 운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6월 22일 대구의 미래 비전과 공약사항 추진 전략 로드맵 수립을 위한 「대구 미래비전 2030위원회」(이하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하여, 분야별로 7개 분과를 구성·운영하였음.
- ▶ 이후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워크숍과 3대 현안T/F³⁾ 발족, 정당관계자 간담회, 시민소통창구 개설, 세대공감 원탁회의 등을 통하여 민선7기의 시정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8년 9월 17일 「민선7기 대구정책오pera」를 개최하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과 미래비전 2030 발표’, ‘민선7기 시정슬로건⁴⁾ 선포식’ 등을 통해 민선7기 대구시의 포부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3개월여 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3) 3대 현안 TF

구 분	주요 검토분야
통합신공항	•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집 방안 마련 •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및 중전부지 개발에 대한 비전제시
맑은 물	• 취수원 이전 및 시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에 대한 공론화 및 정책제안 마련
시청 신청사 건립	•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참여 공론화 결정과정의 사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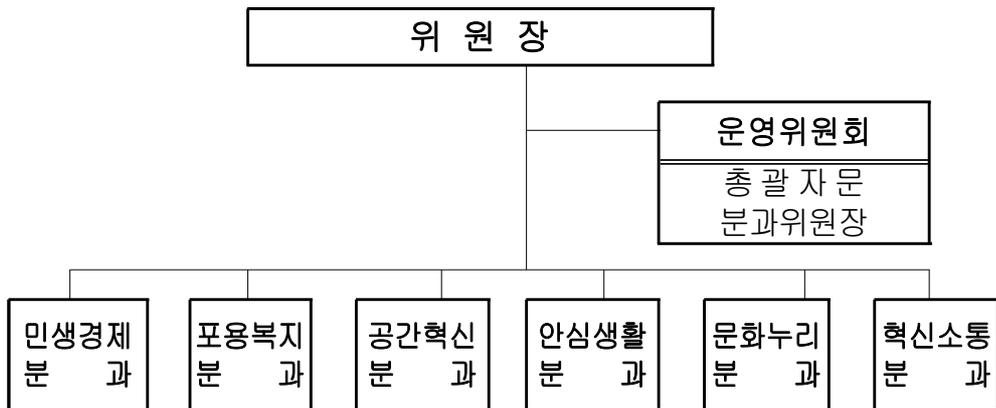
4) 민선7기 시정 슬로건 :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 ▶ 미래비전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대구시는 민선7기 공약이행상황 평가, 시 역점시책 점검과 발전방향 제시, 정책 어젠다 제안 등의 역할을 기존의 미래비전위원회의 연장선 차원에서 수행할 발전적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음.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이 제정조례안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음.
- ▶ **안 제2조에서는**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정책 자문’ 등 위원회에서 자문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각 호로 명시하였음.
-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위원의 수와 자격, 임기와 해촉, 총괄자문 지정, 위원장의 선임과 역할 등 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5명 내외로 구성되는 총괄자문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분과위별 검토사항에 대한 조정과 대외 소통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자문을 맡아 자칫 방만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6개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총괄자문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 준비와 상호 의견 교환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의 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위원회의 규모를 볼 때, 분야별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자문위원회 운영 체계 〉



〈분과위원회 별 주요 검토 분야〉

분과	주요 검토 분야
민생경제	• 경제·일자리투자·혁신성장 분야
포용복지	•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공간혁신	• 도시재창조·교통·통합신공항추진 분야
안심생활	• 시민안전·소방안전 분야 • 녹색환경·상수도사업 분야
문화누리	• 시민행복교육(청년 및 소통분야 제외)·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소통	• 기획조정·자치행정·감사·대변인·홍보도시브랜드 분야 • 청년 및 시민소통 분야

-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들의 자문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와 공무원 또는 전문
- ▶ 안 제11조에서는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 이번 제정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관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시성과 적극적인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 다만, 제3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명시한 위원 자격의 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조건을 국내외적으로 대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 자격요건 확대를 검토하겠음.
○ 안 제5조에서 6개 분과위원회를 열거하였는데, 나중에 다양한 현안 업무가 발생할 경우 6개의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수용이 가능할지?	○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임.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규모를 볼 때 두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지?	○ 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각각 역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가능하다면,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미래비전 2030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위원들 대부분이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호선되는 것인지?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부 위원들은 재위촉을 의리할 예정이며, 활동이 저조했거나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 예정임.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보강과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3조, 제5조와 제6조의 일부 자구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안 제3조제4항제3호를 “그밖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수정함.
- 안 제5조제4항에 분과위원회 추가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자문 및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장, 총괄자문,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밖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안 제5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자문 및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를 “위원회 위원장, 총괄자문,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2. (생략)</p> <p>3. <u>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u></p> <p>⑤·⑥ (생략)</p> <p>제5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u>분과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의견 교환과 전체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자문 및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u></p> <p>〈신설〉</p> <p>② (생략)</p>	<p>제3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밖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u></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 ----- ----- <u>위원회 위원장, 총괄자문,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u></p> <p>② <u>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협조하는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정책 자문
2. 혁신의제 발굴 및 혁신정책 대안 제시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피드백 제시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조정, 대외 소통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자문을 위해 5명 내외의 총괄자문을 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원 등 종사자
2. 시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밖에 국내적,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자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민생경제 분과위원회
2. 포용복지 분과위원회
3. 공간혁신 분과위원회
4. 안심생활 분과위원회
5. 문화누리 분과위원회
6. 혁신소통 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의견 교환과 전체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장, 총괄자문,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시의 해당분야 실·국·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시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 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